■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2)
판매업 대표전화		02-3484-5700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Potassium dichromate
	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 No.)	7778-50-9
	용도	수질 분석용 시약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취급시 정기적으로 누수를 확인할 것 - 취급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눈이나 몸을 씻을 수 있는 세안시설과 샤워시설을 설치할 것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 취급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화학사고 예방	- 연소성 물질과 접촉시 자연연소 또는 격렬한 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연소시 산화칼륨, 이산화크로뮴을 방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칼륨 또는 중크롬산나트륨은 하이드라진과 폭발적으로 반응하므로 주의할 것 - 타지는 않으나 화재의 강도를 증가시키므로 주의할 것
	보관・저장	- 빛, 열, 발화원, 가연성 물질과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할 것 - 서늘하고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할 것 - 환원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저장할 것 - 원래의 용기에 저장할 것
	운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
	기타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